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1호, 2004. 9. 7)

총무위원회

2004. 9. 17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9. 7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9. 7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의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회계과장 장석기)

가. 개정 이유

○ 법령의 개·폐 등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.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인용법령 명확화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⇒ 제89조제4호

2). 법령의 개·폐 등에 따라 인용법령 정비

○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⇒ 제7조, 제7조의2로

○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⇒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○ 도시재개발법 ⇒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○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⇒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8항

3. 관계 법령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,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.

4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의원 김태주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,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등 동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법 및 저촉사항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